

##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3. 1.  
개정 2016. 3. 1.  
개정 2017. 3. 1.  
개정 2022. 4. 4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

**제3조(위원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모집학년도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임무)**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시부정 방지
2. 입시관리를 감시하여 공정성 확보
3. 입시관리 주요과정 입회
  - 가. 원서접수
  - 나. 전산처리과정
  - 다.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
  - 라. 합격자 사정
  - 마. 기타 입시부정 방지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감독
4. 입시관련 자체감사 실시
5. 입학취소 등에 관한 심의

**제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,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단,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과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간사 및 주관부서) 위원회는 입학주무 부서에서 주관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부 칙**

1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해 심의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1.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**부 칙**

1. 이 규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